

용역계약서

계 약 자	발 주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법인등록 번호	110111-3809344
		대 표 자	정 대 창	전화번호	031-927-2600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82(설문동)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명성엔지니어링	법인등록 번호	131211-0040887
		대 표 자	김 선 무	전화번호	031-886-742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18, 301호(야탑동, 동아체인)		

계 약 내 용	용역명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금액	일금 이억일천구백만원정 (₩219,000,000 VAT 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선금지급	없음			
	대가지급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지체상금율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계약기간	계약일 ~ 2022.12.31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 보증기간 2년)			
	기타사항	정밀안전점검은 성능평가(옹벽, 사면) 포함임			

본 용역계약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및 성능평가 업무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용역계약 일반조건 外 1부.

2021년 3월 12 일

발 주 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정 대 창

계약상대자 :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선 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아래와 같다.

1. 용역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용역기간 : 2021년(정기안전점검2회) ~ 2022년(정기안전점검1회, 정밀안전점검1회)
*정밀안전점검 1회에는 성능평가(사면,옹벽) 1회 포함으로 한다.

3. 과업범위 :

- ① 위 치 : 서울~문산 고속도로 구간 전체
- ②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구 분	교 량		터 널		옹 벽	비탈면	기타 시설
	1종	2종	1종	2종	2종	2종	
서울~문산 고속도로 안전점검 시설물	24개	16개	4개	4개	10개	3개	1,2종외

* 기타시설물 : 상기 1,2종 외 기타교량, 옹벽, 비탈면, 파형강판 및 암거, 건축물(부속동포함)

- ③ 과업지시서 업무 :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회에서 정기,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④ 과업지시서외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업무
- 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지침 또는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의 변경에 따른 업무
- ⑥ 긴급사고 또는 국가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돌발상황에 따른 특별업무

제3조 용역비

1. 계약금액 : 일금 이억일천구백만원정 (₩219,000,000) (VAT 별도)

2. 용역비 구분 :

(단위: 원, VAT별도)

NO	용역구분	횟수	단가/회	금액	비고
1	정기안전점검	3	36,363,637	109,090,911	
2	정밀안전점검	1	109,909,089	109,909,089	성능평가 포함
합계				219,000,000	

제4조 용역비의 지급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선금금 : 없음

2. 기성금 :

- ①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정기,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제출후 “발주자”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기성검사 결과 성과품 보완 필요시 성과품 보완 제출 완료후 기성금을 청구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② 기성대가는 계약금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한 날로부터 삼십일(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계약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성능평가는 2022.12.31.까지로 한다.)

2. 아래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발주자”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 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6조 용역감독

“발주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업무진행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수행 과정을 감독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용역이행 감독을 위해 그 사무를 위임한자에게 용역 수행 입무 및 기성검사 등 전반적인 용역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입찰견적서 및 산

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계약 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할 수 있다.
3.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1호 내지 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2.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 용역계약 이행보증

1. “발주자”가 시행령 제50조 제11항 및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 나.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납부 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되면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서 수정

1. “발주자”는 사정에 따라 보고서 내용의 수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경미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 사항은 일간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정기보고와 긴급상황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변경

1. 용역수행 중 여건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 내용의 일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변경의 근거는 관련 법령, 지침의 변경에 따른 사항 외 입찰시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범위 변경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발주자”의 지시 또는 통지등 문서상의 효력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에 의한 계약변경 사유에 따른 용역계약 금액이 증감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을 조정한다.

제14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수행 중 발생한 안전 및 환경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점검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원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법령상 명시된 의무조사 등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업관련 자료제출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과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 인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이행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외), 주무관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사무, 인·허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 절차에 가능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17조 민원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제14조 3항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에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1항에 규정한 안전조직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제14조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다.

제19조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본 계약 제14조 2항 시험, 장비 이용 등 환경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유권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들과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작성한 보고서, 자료 및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발주자”에게 있다.
2.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등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과업성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제공 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발주자”로 이전된다.

제21조 용역의 중지 및 폐지

1. “발주자”는 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이 완료되었다고 계약상대자가 상호 인정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과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니 아니하는 경우
 - 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3.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보수이력 등 시설물에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만, 국가보안 및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 할 수 있다.

제23조 발주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공정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평가 등에 있어서 용역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등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매1일당 용역비의 1000 분지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는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나.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가. 과업수행기한 내에 과업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특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기한 이후에 용역특수조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특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나. 과업수행기한을 경과하여 과업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업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아래에 각호에 1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용역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의 용역주행 지연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때
4.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용역의 수행을 중도 포기한 때
5.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 강제 집행을 하거나,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지급 보증한 약속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 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전업 또는 폐업 할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9.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때
11.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12.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때

제26조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특법”상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기한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정기안전점검 납품목록
 -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7부

2) CD보고서 : 7Set

나. 정밀안전점검 납품목록

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개소별 7부

2) 사진첩 (용역수행 전반 및 결함부) : 7부

3) 외관조사망도(A3 축소도면) : 7부

4) CD보고서(종합보고서, 별첨자료 포함) : 7Set

다. 성능평가 보고서(사면,옹벽) : 7부

※ 납품부수는 관계기관 및 발주처의 추가 요청시 추가로 납품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성과품이 “발주자”의 용역지시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재 수행하여야 한다.
3.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일 까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던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점검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와 관련된 여하한 사항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기술이용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발주자”의 청구가 있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의 지연 및 하자로 인한 “발주자”가 입은 손해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제30조 분쟁해결

1. 계약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 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 나.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불가항력

1. 불가항력 이라 함은 태풍, 호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이하 “불가항 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 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가.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6조의 분 쟁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2조 특허권의 사용

과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 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특허권의 사용을 사전 보고하여 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 알선 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효력

이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 한 날로부터 쌍방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이 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

제34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첨부하고 용역 수행 중 이의가 있을 시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되면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회적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1년 3월 12일

발 주 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82(설문동)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창



계약상대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69번길 18, 301호
주식회사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선무 (인)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 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대가의 지급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성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 체결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과업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 할 수 있다.
- ③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한 기성대가에 의한 대가의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반기별 예정 실적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보고서 제출후 기성검사 완료시 기성부분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⑤ “발주자”는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검사내용을 확인 포함하여 30일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점검보고서의 내용과 검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제4조 손해보험가입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근로자 자격

-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용역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투입한 근로자가 용역과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노임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 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감독원의 지시

-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하여 “발주자” 및 “발주자”가 위임한 감독원(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 또는 감독을 위임한 전문기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감독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용역 계약 체결후 일십오(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용역 예정공정표
 -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다. 정기,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세부실시 계획서
 - 라. 기타“발주자” 및 감독원이 지정한 서류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발주자” 및 용역 감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용역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독자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에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업인수

-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2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과업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보수

-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2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 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 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제13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 ①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과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충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제14조 하자담보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

한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 받는 날까지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용역과업의 경우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전체 용역과업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

제15조 법령의 준수

-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 동일 공종의 다른 회사에 용역 하도급 행위는 금지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직접수행 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①, ②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을 무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건으로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위 ③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계약 효력을 자동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분의 공사 및 용역비 대가를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을 먼저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항(①, ②, ③)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해제자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 ① 일반조건 제25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잔여과업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행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계약상대자의 보안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 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보 칙

-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산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회 공지와 같이 조정 하지 않는다.
- ③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내 포함된 교량점검용 장비, 터널점검용 장비 및 도로교통

안전 통제비등 장비(인원포함)의 설치, 신고 및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가 비용은 청구는 할 수 없다.

-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구조물에 대한 시험장비, 기록장비등은 사전 검, 교정 인증을 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보고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의 전반을 지휘토록하고 감독자와 수시로 업무협의 및 진행사항 보고를 해야하며 과업지시서의 도로대장, 시설물 관리대장등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을 해야 한다.
- ⑥ “유지관리운영사”는 자체점검, 초기점검 결과 등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운영사”의 포장시설 등 자체조사와 “발주자”에 인수된 신월릉교 영구계측 자료에 대한 해석 및 평가를 해야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자, 주소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책임기술자 및 용역수행기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 ⑧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2021년 3월 12일



발 주 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82(설문동)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창 (인)



계약상대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9번길 18, 301호
주식회사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선무 (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과업 지시서)

2021. 3.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목 차

I. 일반조건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의 개요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기간

1.4 과업의 일반사항

II.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가. 일반

나. 점검계획 수립

2.2 과업의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마. 시설물 개선방향 제시

바. 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3 제공서류

2.4 종합결론

2.5 성과품제출

서울문산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I.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준하는 시설물안전점검 용역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시설물의 현황 (붙임1)

나. 과업의 범위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진단 계획수립
- 3) 현장조사(상세외관조사 등)
- 4) 주요 구조체의 구조계산 및 안전성검토
- 5) 콘크리트 중성화, 강도, 부동침하, 균열, 철근배근 등
- 6)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
- 7) 시설물 방수 및 내부 누수, 결로 등 문제점 검토
- 8) 보수대상 및 우선순위, 보수 대책 수립
- 9) 보수·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용 산출내역 작성 등
- 10)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제시
- 11) 종합평가
- 12) 보고서 작성
- 1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 기간 : 착수일부터 ~ 2030. 12. 3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내부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지연 및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변경이 불가피한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1.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매주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중 중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 서류제출

- 1)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용역수행은 관계법규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참여기술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정 이수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①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② 과업의 정도를 고양키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점검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수행항목
 - ① 계약 대상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고성능 탐사장비의 이용 필요시
 - ② 각종 전문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③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 ④ 전문적인 시료 채취 및 평가
 - ⑤ 고도의 식견을 요하는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 및굴절, 변위측정 등 전문분야
 - ⑥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바. 공정보고

- 1)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수행실적에 대한 매월 공정보고서를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 보고한다.
- 2) 긴급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설물이 즉시 조치필요시 보수 ·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중간보고
정밀점검 완료 전 15일 이내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시 작성하여 제출
- 4) 기 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결정시
 - 용역수행시 (용역 착수시, 수행단계, 성과품 작성시, 공정보고, 자문 회의시)
 -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사. 기록보존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아. 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자. 과업의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시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차. 적용 및 준수이행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적용기준은 다음 지침서에 따라 수행한다.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3)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 4) 기타 토목(교량,터널)구조안전 및 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도로교,터널 표준시방서 기타 관련법규,설계지침등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업 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과업수행 책임 및 기타사항

-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의 하자로 예산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재시행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4) 미 계약된 물량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시에는 물량을 조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5)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하고 시설물 조사표는

- 정형화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6) 기타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 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II.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가.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등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 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 8) 접근방법 결정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 선택
-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과업의 세부사항

정밀점검 세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내용
부재 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균열	균열폭 · 길이 및 면적을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 깊이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변위 · 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기초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이력)의 수집·분석
- 2) 대상시설물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진동, 내구성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 4)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 5) 상기 항목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 구조물에 대한 최적합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구조물의 안전성,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제시한다.
- 7)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8)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 할 때에는 협의 결정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시료채취 등이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해당사항 적용)

1) 외관조사

대상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진단부위 및 진단사항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부재 손상조사 (콘크리트 및 강재)

- 수평 및 수직균열
- 박리박락, 철근노출, 백화현상
- 열화, 골재분리
- 철근의 부식, 누수, 체수
- 강재부식, 변형조사, 강재도장, 상태조사
- 볼트 체결상태
- 면외 힘의 발생여부
- 용접부 등 균열조사
- 처짐 조사
- 수평 및 수직균열, 박락, 철근노출
- 백화현상, 변색, 열화, 골재분리, 누수, 체수, 철근의 부식
- 수평운동, 경사 또는 침하
- 기타

3) 비파괴 현장시험

- 각종 시험의 방법 및 항목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 결과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조사
 - ① 비파괴검사법 :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파괴검사법 : 코어채취를 통한 검사방법을 사용하며 채취부위는 외관조사 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시험 필요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시료채취 :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위선정
 - ④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염분함유량 분석, 비파괴시험, 압축강도, 탄성계수, 콘크리트 배합 추정 등 측정
 - ⑤ 균열조사 :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 ⑥ 균열조사장비: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경)
 - ⑦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도면, 사진대지 등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형식)
 - ⑧ 균열의 진행성 조사(균열게이지를 부착하여 진행성 여부 판단)
- 철근 배근 조사
 - ① 배근간격, 직경조사 : 자기법(ferroscan) 또는 전자파법(RC-Radar)을 이용
- 화학적 분석
 - ①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에 의한 중성화 깊이 측정
- 염화물시험
 - ① 전위차 적정법 및 질산은 적정법을 이용한 콘크리트내의 염소이온중량의 측정
- 계측(필요시)
 - ① 균열, 건물의 기울기, 침하, 부재의 변형 등은 계측을 실시하여 현상을 명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계측위치 및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 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은 시설물 전체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 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항목 및 중요도를 고려해 총 단위 상

태평가를 실시한다.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결과를 평가한다.
- 정기,정밀점검,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마. 시설물 개선 방향 제시

1)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시

- 대상시설물 손상부위 및 안전위험 요소들이 보수·보강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경우 보수·보강공법 및 안전에 우선하여 부위별 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 공사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기본도면 및 공사비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 및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크랙, 누수, 결로 등)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업 여건을 감안한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공법 제시에 따른 개략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서울문산고속도로 대표이사)
- 정기,정밀점검,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정기,정밀,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안전점검 및 진단 개요

과업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주요구조부 내력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중성화에따른 내력손실, 기타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여부)
- 재료시험, 측정결과 분석
- 기 시행한 용역(점검 및 진단 등)보고서와 손상물량 등을 비교 검토, 균열 등 손상진전 여부를 확인 유지관리상 문제점 도출(보수·보강), 문제점에 대한 대책,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을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7) 안전등급 지정

실시결과 상태평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 유지보수 관리 방안 및 공법 및 비용 산출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 설계도서, 준공 및 이후 안전점검(초기,일상,정기,정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2.3 제공서류

가. 발주기관 제공서류

- 1) 기존설계도면
- 2) 하자점검 및 보수·보강 내역
- 3) 초기 안전점검 보고서

2.4 종합결론

가. 종합결론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성 및 안전성에 대해 판단 후 보수·보강 등 시설물의 개선책 제시 (사업량 및 사업비용 등)

- 1) 상태 및 안전성 비교 분석
- 2)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 분석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제시

-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내구성능평가 및 결과를 제시하고 보수보강 부위별 우선순위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용역결과 보고회

- 1) 발주자가 보고회 요청시 응하여야 하며, 보고 및 보고자료(ppt) 준비는 용역수행자가 한다.

2.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 2) 본 과업의 성과는 보수·보강공사 등 계획수립을 시행할 예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 제시한다.
-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함.
-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6)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 7) 참고문헌을 명시(List Up)하여야 한다.
- 8) 종합보고서 제출 5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 9) e-보고서는 별도 작성하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0)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 e-보고서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 12)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 1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4)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 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종합보고서를 준공 5일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여,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부록작성

- 외관조사망도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과, 보수·보강이력 및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을 동일도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 한다

①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점선으로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②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을 보수한 경우는 청색으로, 보수 안한 경우는 적색으로, 본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은 검정색으로 표기한다.

③ 손상발생연도와 보수보강 시행연도를 외관 조사망도에 표기한다.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각종 측정, 시험, 장력측정 및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 자료

나. 성과품 제출목록

- | | |
|---------------------------------------|--------|
|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유지관리지침 등 모든 과업사항 포함) --- | 10부 |
| 2) 성과품 및 사진첩(CD, 외장하드) ----- | 10 SET |
| - 현황사진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
|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 1식 |
| 4) 시설물 관리대장 (양식) ----- | 1식 |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1 -	입찰일자	2021년 3월 3일
	건명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용역(2년)		
	금액 (부가세별도)	금 이억이천구백만원 정 (₩219,000,000)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주)명성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31211-0040887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301호	연락처	031-886-7422
	대표자	김선무	주민등록번호	670801-1274219

본인은 귀사에서 정한 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견적금액으로 준공(용역 수행) 기간내에 공사(물품,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3월 03일

입찰자 : 김 선 무
(주)명성엔지니어링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집 계 표

■시설물 안전점검용역(2년)

구 분	전체금액(원)	비 고
1. 정 기 점 검	120,000,000	정 기 점 검 3 회
2. 정 밀 점 검	60,000,000	정 밀 점 검 1 회
3. 성 능 평 가	39,000,000	성 능 평 가 1 회
4. 총 금 액	219,000,000	

내역서

구분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비고
				단가	금액	
1. 안전점검		1	식	219,000,000		
1] 정기점검				120,000,000		
a. 1종		1	식	70,000,000		
b. 2종		1	식	35,000,000		
c. 1,2종 외 기타		1	식	15,000,000		
2] 정밀점검		1	식	60,000,000		
a. 정밀점검		1	식	60,000,000		
3] 성능평가		1	식	39,000,000		
a. 정밀점검		1	식	39,000,000		